

「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추진

□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입법예고기간 '07.2.28 ~ 3.19 (20일간)

○ 앞으로 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밖에도,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대형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을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I.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 기술발전·수요변화로 기존 인증제도에 의한 안전관리 한계

- 다양하고 까다로운 신개발제품 보급이 증가하고 소비자안전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필요
 - 기업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 ※ 현재, 247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
 - 신제품 시장진입 애로해소와 인증비용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 인증시장개방·인증마크상호인정에 대비한 제도개선 필요

-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제도 채택이 국제적인 추세로 세계각국의 인증제도가 자율안전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자율안전확인 기반의 외국인증마크 : EU CE, 미국 UL, 일본 PSE 등
- FTA/MRA·DDA협상시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요구 증가

□ 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필요

- 불법전기용품 대역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정보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등

II. 주요 개정내용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관리방법을 차별화

- (1)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낮은 품목은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함
 -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
 - 전선·퓨즈·전열기구 등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 「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 자율안전확인을 위해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 ※ 신고시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유효기간 : 3년)

- 향후, 시험기관지정과 신고의무에 대한 자율화 검토
- (2) 기업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자율성은 보장하되, 범위반에 대한 벌칙은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

- (1) 불법전기용품을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전기용품 대여」는「불법전기용품 제조·판매」와는 성격이 달라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처벌기준을 적용
 -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안전성조사」실시근거 마련
 -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해확산 방지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3) 유통중인 전기용품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불량 전기용품 증가가 예상됨
 - 백화점·대형유통업체·언론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하여 시장사후관리 기능 강화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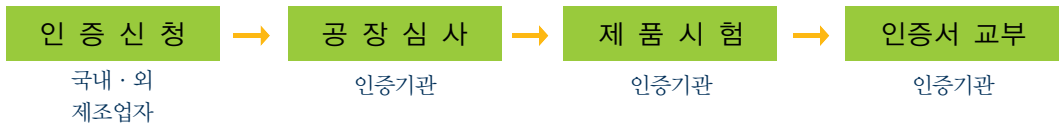
-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이며, 세계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있음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974년 제정)
 -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대상 : 247개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전기기기류 132 품목
 - 전기톱, 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17품목

- TV, 오디오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26품목
- 모니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 9품목
- 형광등기구, 램프 등 조명기기 18품목
- 전선, 스위치 등 전선 및 전기부품 45품목

○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군포)
- 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 한국전자파연구원(경기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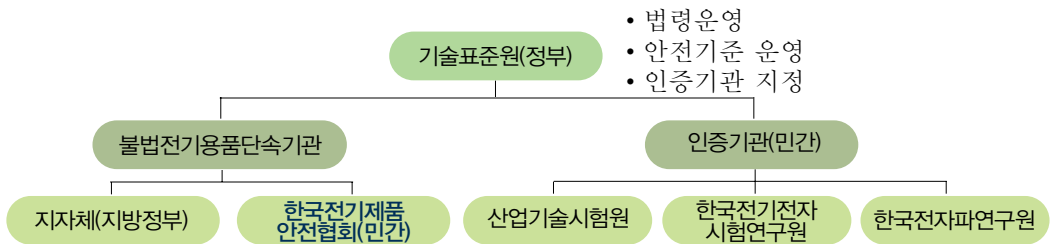
□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인증방법



○ 인증방법(신청서류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 부품명세표)

- 공장심사 :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 제품시험 :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
- ※ 안전인증 처리기간 : 45일 이내

□ 제도 운영체계



□ 사후관리

- 정기검사 : 연1회 이상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안전인증기관)
- 시판품 조사 :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정부)
- 불법전기용품조사 : 시·도지사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시중 유통제품, 인터넷 쇼핑몰, 세관 통관자료에 의한 조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반도체조명(LED) 국가표준(KS) 제정된다

도로, 비상구 표시에 활용되는 LED 유도등 등 3년간 15종 제정

- 최고 90%까지 전기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여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받는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개발 및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3년간 15종의 KS 규격 제정이 추진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기업의 LED조명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과 조명제품의 품질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LED조명 표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조명시장의 30% 이상을 LED조명으로 대체하기 위한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중
-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효과 이외에도 수명이 길고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명 등 내구성, 안전성, 인체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개발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게 한다는 전략이다.
 - 아울러 국내 개발 조명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KS규격으로 제정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저가의 품질이 낮은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07년에는 건물의 비상조명등, LED 전광판, 열적 특성, 안전성 요구사항, 성능 시험방법 등 8종을 제정하고, '08년에는 자동차 조명용 LED 성능 시험방법 등 4종, '09년에는 LED 가로등 등 3종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KS 규격이 제정된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관계기관의 각종 인프라 등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LED조명 표준화 컨소시

업」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KS 규격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들 규격을 전략적으로 IEC 국제표준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조명제품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의 일종인 발광다이오드로 전기신호를 보내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일반 조명, 자동차 및 의료용 조명, LCD 백라이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일반조명과 비교한 LED조명의 특징

① 광변환 효율이 높아 소비전력이 매우 적음

- 발광효율(lm/W): 백열등(15) → 형광등(90) → LED(150, 일본 Nichia)

- 국내기술수준: 40 lm/W(서울반도체) → 80 lm/W('07년말)

※ lm/W(루멘/와트) :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인 Lumen을 Watt(소비전력)로 나눈 값, 즉 1와트당 조명기기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음

② 수명은 4만시간 이상 사용 가능

- 백열등(1천시간) → 형광등(8천시간) → LED(4만시간)



싱글PPM 품질혁신, 중소기업 수익창출 모델로 육성

- 2007년 대대적 품질혁신 확산으로 알짜 중소기업의 길 제시 -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9일(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실질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에 품질유지와 협력수단으로 활용해 온 [싱글PPM 품질혁신]을 대대적으로 확산·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이란?

- 단기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자리 숫자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불량률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운동(PPM은 Parts Per Million 즉, 백만분율을 의미함)
- 정부는 1995년부터 중소기업의 품질혁신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 95년부터 전기·전자·자동차 등 기반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싱글PPM 품질혁신제도'가 완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 '95년 '05년까지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를 받은 중소기업(1,597개사)의 연 평균 부가가치 증가액은 1.26억원, 출하불량률 감소율은 평균 75.3%

○ 금년부터는 품질혁신이 취약한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제도를 확산·보급하는 한편, 우리나라 토종 품질혁신제도로서 글로벌 품질혁신전략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지난해 6월 대대적 제도 개편에 이어 산업설비·유통업 분야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 2, 3차 협력기업 등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중소기업이 싱글PPM 품질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유도하는 한편,

- 납품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간 싱글PPM이 협력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웹방식의 품질진단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임

- ☞ 중점 추진사항 : 1) 산업설비, 유통 등 비제조분야 인증시스템 개발
 - 2)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간 품질협력 모델 개발
 - 3) 유사제도 인증기업에 대한 심사항목 생략 등 간소화 운영
 - 4) 웹 방식 품질건강 자가진단, 협력기업 관리프로그램 개발

- 이와 함께 품질혁신 지도를 받는 기업의 책임감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비율을 줄이는 대신(75% 60%) 지원기업수를 확대하고
-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1일 지도, One-Point 지도 등 지도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별도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비용 일부(20%)도 지원토록 하며,
- 싱글PPM 품질혁신제도에 대한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품질혁신 전략(GSQIS)]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GSQIS(Global and Sustainable Quality Innovation Strategy)란?
 - 기업이 품질혁신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품, 프로세스, 인적자원을 가진 것을 의미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수) 업계, 학계, 지도 및 인증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혁신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

중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라벨링 필수!

- 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 추가 실시 -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일명 China RoHS)이 금년 3.1 시행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의 포함여부*는 물론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유해물질의 제품내 함유허용기준 : Pb, Hg, Cr, PBB, PBDE(1,000ppm), Cd(100ppm)

그런데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 산정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산정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표시 예 〉

		<p>[그림1] :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제품</p> <p>[그림2] :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p> <p>※ "10"은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산정한" 에이며, 업체가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p>
[그림 1]	[그림 2]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지난번 순회설명회*에 이어 오는 3.28일부터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대응 전문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 1차 China RoHS 및 REACH 대응 순회설명회('06.12~'07.1, 5회, 988업체 참석)

동 순회교육에서는 China RoHS 시행이후의 법규동향, 제품별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산출방법, 국내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중점 전달해 줄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사)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China RoHS 대응의 핵심이 제품의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라벨링이므로 우선 지방청*을 포함하는 시험분석기관에서 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후, 금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자사에 맞는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설정 라벨링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4개 지방청(경기, 대전, 광주, 부산)에 RoHS분석장비를 구비하고 품목당 6만원~10만원의 저렴한 비용(일반시험기관의 1/3수준)으로 유해물질 분석지원 중

China RoHS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 개요

- '07.3.1부터 전자정보제품으로 분류된 11대 분류, 완제품 및 부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 3개 부문 산업표준 (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을 제정 ('06.11.6) 하였으며 국가표준으로 선포할 예정
 - ※ 유해물질함유 표시 등은 생산자 자기선언으로 시행 예정
 - 강제인증을 요하는 중점관리품목은 선정 협의중이며 최종 선정은 법 시행 이후인 '07년 하반기 예정
 - ※ 중국 안전규격인 CCC인증제도에 환경측면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예상
 - 강제인증을 위하여 '06.2월에 지정한 18개 시험분석기관외에 8개 기관을 추가 지정, 26개 기관으로 확대함

◆ 대상제품

중국국가통계국의 전자정보산업분류 목록에 따라 11대 분류, 1,400여종 발표 ('06.3.16)

- ① 레이더 기기 : 지휘 자동화 시스템, 부대장비 등
- ② 통신전송기기 : 통신무선송신기, 광통신 기기, 교환기, 전화기, FAX, 휴대폰 등
- ③ TV방송기기 : TV방송제작기기, TV 및 관련기기(튜너, 안테나, 픽업 등)
- ④ 컴퓨터 : 노트북, PDA, 데스크탑,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 ⑤ 가전기기 : TV, 비디오, 오디오, STB 등
- ⑥ 전자계측기기 : 오실로스코프, 디지털테스트기, 측정기기 등
- ⑦ 산업용기기 : 반도체장비와 집적회로 전용기기, 전자부품 전용기기 등
- ⑧ 전자부품 :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스피커, PCB, 센서 등
- ⑨ 자동판매기 : 냉온음료 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 ⑩ 전자부속기기 : 전자관, 브라운관, 광전자부품, 집적회로, 케이블, 건전지 등
- ⑪ 전자응용제품 : 전자게임기, 전자레인지, 디지털피아노, 의료기기(초음파 등)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음, 단,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은 대상제품에 포함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RoHS)

- ◆ 신식산업부 주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5개 정부기관(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등) 공동으로 '02~'04년간 법안 마련후 '06.2.28일 공포
- 전자제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 금지
 - 생산·판매시 친환경설계·재료·기술, 친환경 생산공법,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대한 중국 국가 표준, 업종표준 충족 요구
 - 환경안전사용기한, 포장물 재료성분 등의 정보공개 의무

□ 주요내용

- ▶ 총칙(제1조~제8조)
 - 제정근거 마련 : 청정생산촉진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제품질량법 등에 근거
 - 용어정의 : 대상제품, 유독유해물질명칭, 환경보호사용기간
- ▶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제9조~제21조) : 생산자/수입자의 의무사항 규정
 - 유해물질과 성분, 환경보호사용기한, 재활용 가능성의 표시
 -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6가지 유해물질을 금지하거나 제한
 -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CCC인증을 강제
- ▶ 벌칙(제22조~24조)
 - 국가/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시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 부칙(제25조~27조)

□ 세부내용

- ① 대상제품(제3조1항) : 전자통신제품, 라디오 및 TV제품, 계산기제품, 가정전자제품, 전자계측기, 전자전용제품, 전자부속품 등 11대분류, 1,400여종
- ②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와 생산시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고려(제9조, 제10조)
 - 전자정보제품 설계자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설계(제9조)
 -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생산 및 제조(제10조)
 - 자원이용효율이 높으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공법을 채택
- ③ 유해물질 및 함량, 환경보호사용기한, 재활용 가능성 표시(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제11조)
 - 환경보호사용기한의 상표등록 양식 및 방식을 통일적으로 규정(표준제정)
 - 유해물질함유부품에 대해 명칭/함량, 재활용 가능여부 등을 명시(제13조, 표준제정)
 - 포장물을 제조, 사용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재료 채택(제14조)
 - 분해가 쉬우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채택, 재료명칭 기재
 - 수입제품도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제16조)
- ④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6개 유해물질 금지 또는 제한(제18조, 제20조)
 - 신식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중점관리목록을 공동으로 수립, 조정(제18조)
 - 실제여건과 과학기술발전수준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
 -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오염통제요건에 부합(제20조)
- ⑤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강제적인 제품인증관리를 시행(제19조)
 -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는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에 대해 강제 제품인증 관리
 - 세관당국은 출입국검증검역기구에서 발급한 화물통관증명에 의거 제품을 검사, 통관

□ China RoHS의 생산자 의무사항

○ 생산자 의무사항 I (2007. 3. 1~)

- ① 마킹 표준(SJ/T 11364-2006)에 따른 의무 준수
 - 아래 그림은 기업스스로 자기선언을 할 수 있음.



[그림 1]



[그림 2]

그림의 크기는 5X5mm² 이상이며

제품 표면적이 5X10 mm²이상시

제품 표면에 부착

⇒ 그림 1은 6대 유해물질 규제치에 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

⇒ 그림 2는 6대 유해물질 규제치에 불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10은 예시를 보여준 것이며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나타냄)

※ 환경보호사용기한은 기업이 자기선언하여야 하며 제품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을 뜻함.

- 완제품내에 포함된 부품의 최소 환경안전사용기한이 곧 제품의 환경안전사용기한이 됨.
- 기업의 혼선을 막기위해 중국 산업계에서 제품별 환경보호사용기한의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 이전에 발표예정
- a:b:c = 5:4:6 의 비율임


- 유해물질 규제치에 불만족하는 제품은 아래의 양식에 의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해야만 함

表一 有毒有害物质或元素名称及含量标识样式

部件名称	有毒有害物质或元素					
	铅 (Pb)	汞 (Hg)	镉 (Cd)	六价铬 (Cr ⁶⁺)	多溴联苯 (PBB)	多溴二苯醚 (PBDE)

O, X에 대한 주석표시 필요(예시, O는 유해물질이 SJ/T11365-2006표준의 유해물질 농도규제치에 만족함을 나타내며 X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나타냄)

-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리사이클 마크표준(GB18455-2001)을 따라야 함



04 - 플라스틱번호
LDPE - 플라스틱유형

01:PET, 02:HDPE
03:PVC, 04:LDPE
05:PP, 06:PS

- 04는 플라스틱의 유형을 뜻함.
- 종이 포장물일 경우 회수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음.